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김익찬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시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 24.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1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30일(화) 9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
-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19일

발 의 자 : 이윤정 의원

찬 성 자 : 이영호, 안성환, 김
익찬, 이길숙 의원

1. 제안이유

- 미래의 희망인 청년을 위한 총체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 환경 마련과 청년의 참여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개정함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6조)
-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 청년의 참여 확대(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8. 1. 24. ~ 1. 29.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행복과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창업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마. 청년의 부채경감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인권·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광명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과 시장이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 등 청년정책 업무관련 부서의 장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반드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캠페인·토론회·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복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부채경감) ① 시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의원 이 윤 정 (2680-2507)

광명시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16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 이길숙 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자금 외지 유출 예방으로 지역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함
- 지역 내 소비촉진하고 지역자원의 지역 내 순환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상품권 유통구조를 확립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안 제3조)
-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안 제4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안 제5조)
- 가맹점 준수사항(안 제7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안 제8조)
-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안 제9조)
- 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 제공 방법(안 제12조)
- 상품권 활성화시책(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8. 1. 24. ~ 1. 2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임

광명시 광명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장이 발행하는 광명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사랑 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판매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광명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광명시(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광명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 시설, 체육시설 등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6조제1항 및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⑦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으로 한다.

제12조(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 제공 방법) ① 상품권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일시불)와 체크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품권 권면가의 5% 할인: 매년 명절일(설·추석)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실시한다.

2. 상품권 권면가의 3% 할인: 제1호의 상품권 권면가의 5% 할인 기간 외의 날로 한다.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할인 판매율에 준하여 판매를 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12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 5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상품권 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제1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다.

⑥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판매 수수료는 시에서 보전하며, 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매년 1회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명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매년 1회 가맹점을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명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3. 상품권 판매점 또는 사용점에 대하여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행사·공사·용역·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업경제과
입 안 자	의원 김익찬 (2680-2538)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16일

발 의 자 : 이영호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이길숙·안성환·
이윤정 의원

1. 제안이유

-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 플랫폼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숙박, 자동차 등 개별 소유의 잉여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유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로 농업이 글로벌 시장에 편입되면서 산업화가 진전되는 한편, 저성장, 획일화 등의 부작용과 함께 도시와 농촌, 농촌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
- 한편, 민간의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환경보전, 식품안전 및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등을 기치로 한 공동체 지원농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광명시 차원의 공유농업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광명시 공유농업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 나. 시장은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의 책무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 시장은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의 요건과 역할을 규정하고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지역에서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교환,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협력을 위해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시장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시장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홍보 등을 실시토록 함(안 제9조)
- 사. 시장의 공유농업 업무의 일부를 광명시 농업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1. 24. ~ 1. 2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공유농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회복과 상호 신뢰를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이란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도시민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4. “공유농업활동가”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유농업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호에 따른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광명시 공유농업은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한다.

② 광명시 공유농업은 농업의 다양성 확보, 농촌 환경의 보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③ 광명시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상품화 및 시장 유통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광명시 공유농업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광명시의 출연·출자기관의 장 등은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농업플랫폼운영자 지정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광명시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회사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4.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② 광명시 공유농업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
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
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
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기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명시 공유농업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및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① 광명시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을 위하여 지역 또는 광역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을 경우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시장은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유농업의 저변확대) 시장은 공유농업의 가치제고 등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도시농업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생활위생과
입 안 자	의원 이영호 (2680-2508)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47호, 2017.3.21., 일부개정]

-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22.]

상법

[시행 2016.3.2.] [법률 제13523호, 2015.12.1., 일부개정]

-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7.8.9.] [법률 제14845호, 2017.8.9.,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7.8.9.] [법률 제14845호, 2017.8.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

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2012.4.15.]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2012.4.15.]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전문개정 2010.12.9.]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전문개정 2010.12.9.]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6.5., 2012.8.3.>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문개정 2010.12.9.]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12.30., 2016.6.30.>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전문개정 2010.12.9.]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0.12.9.]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16일

발 의 자 : 이 길 숙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김익찬·이영호·
이윤정 의원

1. 제안이유

- 반려동물 치료실, 교육실, 콘텐츠 전시관, 공연장, 입양봉사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있는 문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길고양이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함
- 이에 따라 중성화 사업 및 위탁에 관한 내용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반려동물 치료실, 교육실, 콘텐츠 전시관, 공연장, 입양봉사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있는 문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홍보 등 (안 제18조제2항)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의 위탁 규정 신설(안 제19조제4항)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8. 1. 24. ~ 1. 2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임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원센터”를 “반려동물 치료실, 교육실, 콘텐츠 전시관, 공연장, 입양봉사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있는 문화센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설치 및 관리를”을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보호센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생활위생과
입안자	의원 이길숙 (2680-2539)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 홍보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반려 동물 문화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를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제18조(동물관련 시설운영 및 교육·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반려동물 치료실, 교육실, 콘텐츠 전</u> <u>시관, 공연장, 입양봉사실, 상담실,</u> <u>사무실 등이 있는 문화센터-----.</u>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설치, 관</u> <u>리 및 중성화 사업을 -----</u> <u>-----.</u> ④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 는 전체를 동물보호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 록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 영리민간단체 또는 「수의사법」 제 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에 위 탁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수의사법」 제17조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16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이영호·이길숙·
이윤정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18개동이 복지중심의 동자치센터로 변화되면서 통장들의 업무가 증가함(누리복지협의체 가입 등 활동)
- 현재 통장들에게 사진진작 차원에서 제공하는 있는 1만 5천원 상당의 신문(정보수당 개념) 대신 복지수당으로 지급하고자 개정안을 제출

2. 주요내용

- 복지수당활동 지급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1. 24. ~ 1. 2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의원 김익찬 (2680-2538)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실비변상) ① ----- ----- ----- -----.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
<u><신 설></u>	<u>③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4(통·반장의 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통반의 발전을 위한 화합단결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주민홍보 및 건의사항 보고
3. 각종 사실의 확인 및 보고
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5. 전략자원의 동원 협조와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함)
6. 기타 법령 등에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17일

발 의 자 :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 김기춘, 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입양아도 출산과 같은 혜택을 주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입양포함(안 제1조)
- 입양아의 정의(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8. 1. 24. ~ 1. 29.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출산 부모”를 “출산(입양포함) 부모”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영아를 말하며, 입양하여 지원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입양”과 “출산”을 동일하게 본다.

제3조 본문 중 “아이(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함)”를 “아이”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3항제3호 중 “제4조”를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민보건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광명시 자체)	[] 출산 장려금 (조례에 준함)	[] 둘째 자녀(이름:) [] 셋째 자녀(이름:)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영아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명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 (※ 입양일 경우에는 “출산”을 “입양” 기입으로 본다)
	[] 출산 홍보물품 지원	[] 대상 자녀(이름:)
	[]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셋째아 이상)	[] 대상 자녀(이름:)

공통 서비스	출생자 성명	신청 내용
[] 양육수당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감감(고객명:) 고객번호:)
	[] 도시가스요금 감감(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지역난방요금 감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광명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을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u>출산 부모</u> 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출산(입양포함) 부모</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입양아</u> ”란 “ <u>입양특례법</u> ”에 의해 <u>입양된 영아를 말하며, 입양하여 지원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입양”과 “출산”을 동일하게 본다.</u>
제3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u>아이</u> (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함) 300,000원, 셋째 아이 500,000원, 넷째 아이 이상 1,000,000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인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 ----- <u>아이</u> ----- ----- ----- ----- -----. ----- -----.

제5조(지원절차) ① (생 략)

②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현재 광명시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신청서 1부

2. (생 략)

③ 동장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

④ · ⑤ (생 략)

제5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조 및 제4조-----

④ · ⑤ (현행과 같음)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22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찬 성 자 : 이영호, 김기춘 의원

1. 제정이유

-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의 경우는 성폭력 등과 관련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 그리고 각 위원들의 경우는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규칙에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
- 참고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지금이라도 성폭력 관련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즉시 그 직을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

2. 주요내용

-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17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8. 1. 24. ~ 1. 29.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생학습원
입안자	의원 김익찬 (2680-253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 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구성 등) ① ----- ----- ----- ----- ----- ---.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 등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⑫ (생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17일

발 의 자 :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이길숙·이윤정·
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국내입양의 확대를 통하여 국내 출생아의 국내 양육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의 지원을 통하여 국내입양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입양가족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4조)
- 입양축하금 지원(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안 제7조 및 제8조)
- 환수조치(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8. 1. 24. ~ 1. 2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임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4.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입양축하금 지원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한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입양부모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입양아동	성명	생년월일	
	입양기관	입양신고일	
주 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 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양관련 자료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입 양 신고일	신 청 인			입양아동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	입금내역			비고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지급 일자	지원 금액	계좌 번호	

관계법령 발췌서

「입양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20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1.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시행 2018.2.14.] [경기도조례 제5763호, 2017.11.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지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지원
2. 입양아동이 만18세 미만일 경우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 외에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추가 지원. 다만,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재활치료비 추가 지원
3.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홍보)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언론과 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경기도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16일

발 의 자 :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이길숙·이윤정·
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안 제6조)
-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안 제8조)
-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안 제10조)
-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1. 24. ~ 1. 29.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19일

발 의 자 :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이길숙·이윤정·
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수립(안 제4조)
-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충전시설 설치하는 사람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안 제5조)
- 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8. 1. 24. ~ 1. 2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임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관계법령 발췌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시장등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5.24.>
-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5.23., 2013.3.23.>
- ⑧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1.6.>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7.11.13.] [경기도조례 제5750호, 2017.11.13., 일부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단위 구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보급촉진 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1.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2.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범지역의 지정)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범 지역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실시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13.]

제8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교육청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2.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설치한 충전시설이 개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7.11.13.>]
 -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7.11.13.>]
 - 1.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 2. 충전시설의 운영 계획
 - 3. 필요 전력 수급 계획
 - 4.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계획

5.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서 정한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17.11.13.>][제8조에서 이동 <2017.11.13.>][제목개정 2017.11.13.]

제9조(충전시설의 종류) 제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형 시설로 한다.

1. 급속충전시설 :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직류 100볼트 이상 450볼트 이하 또는 교류 380볼트를 가변적으로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2. 완속충전시설 :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교류 220볼트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전문개정 2017.11.13.]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용) ①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의 수가 3대 이상인 경우 설치할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관련 법령 위반,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7조에 따른 시범지역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제11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

된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충전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관련 법령 위반,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제13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건축허가·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제8조의 적용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업,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8년 1월 19일

발 의 자 : 이길숙 의원

찬 성 자 : 김익찬·김기춘·이영호·
나상성 의원

1. 제안이유

-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복지관 및 지역 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과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할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대상에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있는 다자녀가정 추가(안 제36조제1항제5호)
-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적용 대상에 광명시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 추가(안 제36조제1항제6호)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1. 24. ~ 1. 2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있는 다자녀가정

제36조제1항제6호 중 “**학교**”를 “**학교와** 광명시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수도과
입안자	의원 이길숙 (2680-253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수급자</u>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수급자 및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있는 다자녀가정</u>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u>학교</u> 에 대한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6. ----- ----- <u>학교와 광명시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u> -----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수도요금
가. 가정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나. 일반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40퍼센트
다.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
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수도 요금
가. 가정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나. 일반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40퍼센트
다. 대중탕용에 대하여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퍼센트
3.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관련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빗물이용시설 관련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3. 삭제 <2016. 6. 22>

4. 삭제 <2016. 6. 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해 계량한 사용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매월 상수도사용량 검침일에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검침하고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